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일자 : 2008. 5.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가. 산업 활동으로 자원의 고갈과 급격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지구환경 위기 해결에 부합하고자 하며

나. 2004. 12. 31일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조)
- 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안 제10조)
- 다.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안 제11조, 제12조)
- 라.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관리(안 제13조)
- 마.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제15조)
- 바. 평가, 포상, 시행규칙(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4. 8. ~ 2008. 4. 29.)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사하구의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동 주민센터(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

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관내기업 중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4조(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하구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사하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구청장은 총구매액 대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비율 및 구매실적비율,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비율, 구매실적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의무구매 대상 기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16조의 평가결과 친환경상품 구매 우수 공공기관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